

2017 현안연구
www.idi.re.kr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최태림 |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II. 인천광역시 균등분 주민세 제도 및 현황

1. 개인 균등분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인두세 성격의 세목으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균등하게 지불하는 회비의 성격을 갖는 납세항목임.
 -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지며 균등분은 개인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으로 나뉘짐. 개인에 대한 균등분은 개인 세대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항목과 개인 사업장에 부과되는 항목으로 세분화됨.
 - 인천광역시에서 감면을 계획하는 세목은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임.
-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에 따라 1만원을 과세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제1항).

-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999년에 적용세율이 4,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유지되었음. 세수입 대비 징수비용이 과다하여 조세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였음.
-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1개(97%)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 이후 주민세를 인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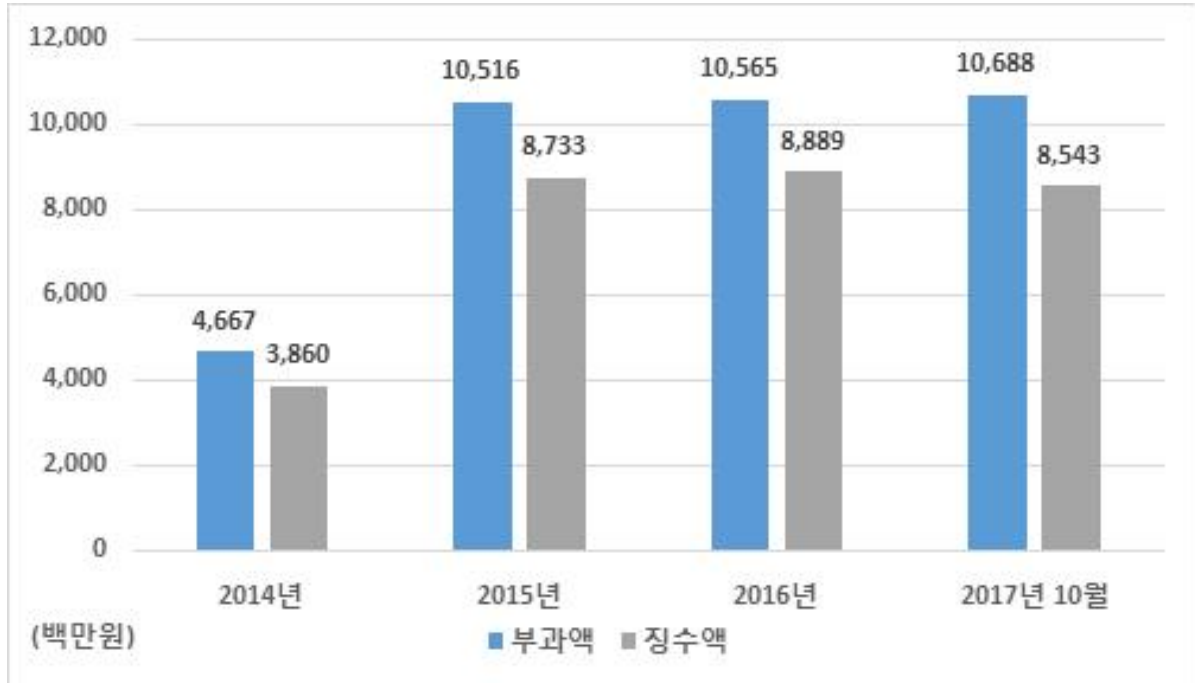
□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개요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임 (제75조제1항).
-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주소 관할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 일반적으로 주민이 전입된 이후의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에 등록된 경우 부과함 (제76조제1항).
- 적용세율: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78조제1장).
- 비과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임 (제77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해당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2. 개인 균등분 주민세 과세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105억 원 수준이며 징수액은 88억 원임.
- 2015년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4년 이후 부과액이 약 50억원 가량 증가하였음.

○ 2017년 인천광역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은 49,947명이고 비과세 금액은 4억9천만 원임.



<그림 1> 인천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징수현황

<표 1> 인천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 (2017년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과내역		비과세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92,666	21,097	49,947	499
개인균등	1,063,000	10,622	49,947	499
개인사업	88,320	6,532	-	-
법인균등	41,346	3,943	-	-

III.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례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지방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의 달성 및 특정계층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수입의 상실분을 의미함 (이상훈 외 1인, 2012).
 - 지방세 조세지출 형식은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로 구분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 측면의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절 사회복지 를 위한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항목 가운데 12 개 항목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감면항목으로 볼 수 있음.
 - 12개의 항목은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세금 감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개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가 있음.
 -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 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¹⁾
 -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에서 제3급까지에 해 당하는 자)에 따른 장애인(제17조) 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등급에서 7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제29조제4항)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 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 해 감면하고 있음.

1) 보훈대상자들은 보훈기금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음. 보훈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훈기금법』 및 유관 법률의 규정을 따름.

2.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감면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제2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세함.

<표 2>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사회취약 계층 지원과 관련한 감면 사항

항목	감면 세목	감면 적용세율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 혹은 자동차세	면제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	면제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 재산세	25% 경감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면제 혹은 50%, 25% 경감
제22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	면제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제22조의4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50% 경감 (취득세, 등록면허세), 25% 경감 (재산세)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자동차세	면제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재산세	면제, 75%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면제, 50% 감면 등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농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세액공제

IV. 사회적 취약계층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방안

1. 감면계획

- 인천광역시시는 80세 이상의 고령자, 미성년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1만원을 감면하고자 함.
 - 주민세 감면대상 인원은(세대주) 66,607명으로 추계됨.

<표 3>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대상 (안)

구 분	감면예상 인원	대상별 중복을 고려한 인원		취약계층 인원 (중복포함)
합 계	66,607	-		126,557
고령자	35,340	고령자+차상위+국가유공자	241	35,340
		고령자+차상위	1,842	
		고령자+국가유공자	5,473	
		고령자	27,784	
미성년자	213	미성년자+차상위	6	213
		미성년자	207	
차상위계층	15,915	차상위+국가유공자	132	59,004
		차상위	15,783	
국가유공자	15,139	국가유공자	15,139	32,000

- 1) 주민세 감면대상자를 고령자→미성년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순으로 중복 배제
- 2) 차상위자 미제출 기관(남구, 부평, 계양)은 타구의 세대주 비율로 추계

2. 감면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

-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주민세 감면액과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이 있음.
 - 세수입 감소 = 주민세 감면액 + 교부세패널티(주민세 감면액 × 94.05%)
- 주민세 감면액과 교부세감소분을 합한 총 재정부담은 12억 9,300만 원으로 예상됨.

3. 감면대상 주요 사항 검토

1) 차상위계층

-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수급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지만 빈곤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계층을 의미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제3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자활급여에만 수급대상이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취합하여 확인해야 함.
 -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음.
- 인천광역시 유관부서의 협조로 구축한 인천광역시 차상위계층은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59,004명으로 집계됨.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2%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함.²⁾ 인천광역시의 수급권자는 모자가족이 26,122명, 조손가족이 109명, 부자가족이 6,356명임.
 -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함.³⁾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족은 532명, 청소년 한부모 부자가구는 47명임.
 -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3-6등급 등록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경우에 장애수당을 지원함.⁴⁾ 인천광역시의 차상위 장애인은 6,764명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

2) 복지로 홈페이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참조하여 작성.

3) 복지로 홈페이지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도를 참조하여 작성.

4)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제도를 참조하여 작성.

하의 비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지원함.⁵⁾ 인천시 차상위 자활사업 수급권자는 497명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희귀성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함.⁶⁾ 인천광역시의 12,554명의 수급권자임.
-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차상위 계층확인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속하지 않은 인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인원은 6,023명임.

<표 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권자 및 확인인원

구분		자격인원 (명)	비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가족	26,122	44.3%
	조손가족	109	0.2%
	부자가족	6,356	10.8%
	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족	532	0.9%
	청소년 한부모 부자가족	47	0.1%
장애인복지법	차상위 장애인	6,764	1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자활	497	0.8%
국민건강보험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2,554	21.3%
차상위 계층확인		6,023	10.2%
소계		59,004	-

출처: 인천시 내부자료, 2017년 5월말 기준

5) 복지로 홈페이지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제도를 참조하여 작성.

6) 복지로 홈페이지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제도를 참조하여 작성.

2) 고령자

- 고령자에 대한 개념이나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적규정은 없고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고령자를 판단하는 연령이 달라짐.
 -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생업지원, 경로우대, 노인복지시설 입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제33조의2).
 -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이 수급권 대상 조건임.
 -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의 수혜기준은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을 포괄함 (원시연, 2015).
- 고령자의 연령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법적 규정 사이에는 격차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은 약 71.7세로 나타남 (2014년 노인실태조사).
-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됨.
 - 2016년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비율은 약 32% 수준이고, 중위소득 50% 미만 (98만원)의 노인비율은 46.5% (처분가능소득 기준) 혹은 65.5% (시장소득기준)임.
 -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제한적임 (이채정 외 1인, 2016).

<표 5> 최근 5년 노인 빈곤율 추이

노인빈곤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상대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기준	47.2	48.1	47.4	44.8	46.5
	시장소득 기준	60.3	61.3	62.5	63.2	65.5
절대빈곤율		33.7	34.5	33.2	28.8	32.5 (예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조자료 (2017. 8. 30)

7)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3) 보훈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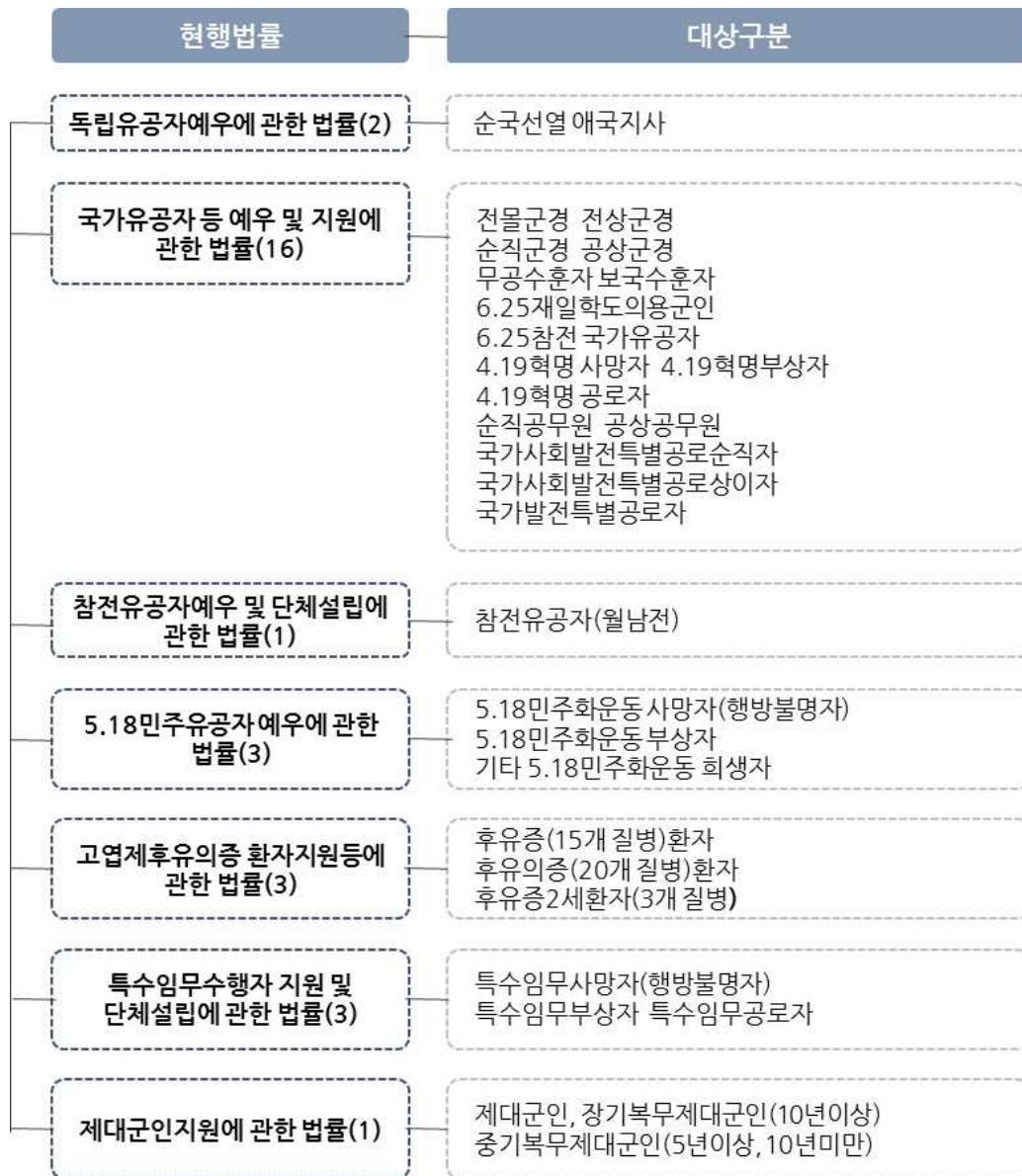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
 - － 국가보훈관련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그림 2>와 같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보훈대상자가 정해짐.
 - －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보훈대상자는 모두 41,339명으로 본인이 31,766명이고 유족이 9,573명임 (2017년 9월말 기준).⁸⁾
 - － 보훈대상자는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훈급여, 교육, 대부, 의료 및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음.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6년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2세에 달하고(e-나라지표,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현황), 고령화에 따른 보훈대상자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⁹⁾
 - －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 보훈대상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유공자 1인당 생계조정수당 평균 급여액이 20만 4천원 수준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함 (김성봉, 2016).
- 인천광역시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훈단

8) 국가보훈처 정보마당 2017년 9월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자료를 참조.
(http://www.mpva.go.kr/info/info600_list.asp)

9)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82

체에 대한 경비지원,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만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 보훈대상 법제 및 보훈대상 유형
출처: 보훈50년사 국가보훈처 (2011)

<표 6> 인천광역시 보훈대상자

구분	계	본인	유족
합계	41,339	31,766	9,573
순국선열	34	0	34
애국지사	293	1	292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10,941	5,120	5,821
무공수훈자	3,774	1,109	2,665
보국수훈자	1,256	1,113	143
재일학도의용군인	29	3	26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21	9	12
순직·공상 공무원	491	129	362
특별공로순직자	0	0	0
6·18자유상이자	33	6	27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144	119	25
보훈보상대상자	187	154	33
참전유공자	17,943	17,943	0
고엽제후유의증	1,984	1,984	0
고엽제후유증2세	3	3	0
5·18민주유공자	93	78	15
특수임무유공자	375	257	118
중·장기복무제대군인	3,738	3,738	0

출처: 국가보훈처 (2017년 9월말 보훈대상자 현황) 저자 재정리

V. 사회적 취약계층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방안 평가

1. 감면신설 평가기준

-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기존 연구의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방안을 평가함 (이선화, 2016; 박지현, 2016)
 - [타당성] 균등분 주민세 감면사유가 감면제도의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판단.
 - [공익성] 지방세 감면수혜 대상의 경제적 취약성 검토. 정책 수혜대상의 담세력 부족 여부에 따라 공익성 판단.
 - [형평성] 감면취지 및 대상에 따른 수평적인 형평성 검토.
 - [적합성] 지방세 감면이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검토.

2. 평가

1) 감면취지의 타당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이하는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서민생활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성

-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계획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차상위계층,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미성년자 가구주과 노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담세력이 부족한 계층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일부 정책대상은 가구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대상 계층 가운데 담세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음.
 - －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고 빈곤률이 높은 집단이지만, 고령자가 세대주 가구를 모두 담세력이 부족한 가구로 보기 어려움.
 - －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공헌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선정한 계층으로 담세력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3) 형평성

-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회비성격으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일부 계층의 감면은 균등부담의 보편성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조세의 원칙으로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원칙)이 이루어지는 것도 형평성 있는 조세원칙인 것을 고려할 때 담세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대상 계층의 선정에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수준에 대한 검토 및 법적근거에 따른 대상 선정이 필요할 것임.

4) 적합성

-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정책수혜 계층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1만원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유의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지원제도의 확대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VI. 요약 및 정책제언

- 인천광역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여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음.
 - － 차상위계층, 80세 이상의 고령자, 미성년자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대상 계층임.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은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다양한 성격의 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의 실효성은 부족함.
-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감면대상이 정해지지 않도록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대상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차상위계층과 보훈대상자의 경우 법적인 근거와 행정절차에 의해 정책지원대상이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 고령자 계층의 경우 연령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책대상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담세력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를 선별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행에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2세인 것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능력을 상실한 8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임.¹⁰⁾

10) 자료출처: e-나라지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

- 현재 고려중인 사회적 취약계층 이외에 장애인과 의사상자 포함을 제안하는 부서의 의견이 있음.
 - 장애인 가구 가운데 경제력이 취약한 가구는 차상위 장애인으로 차상위 계층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의사상자와 그 가족 혹은 유족은 기존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의사상자 관리가 체계화 되어있지 않아 감면대상자 추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의사상자 관련 납세 대상자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의사상자

- 의사상자와 유족/가족은 “직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을 의미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사상자와 가족 및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
-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의사상자가 44명 (의사자 33명, 의상자 11명)임.